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조미선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과정에서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사고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보험회사 선정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보험 보장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보험금 청구 및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년 8월 26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
- 제출서식 : 조례(규칙)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오산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입법예고>공지)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정책지원팀)
 - 우편번호 : 18132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56
 - 전자메일 : csm0101@korea.kr

오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

게 입힌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계약 및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